

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-181호

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

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10.

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청장인



1. 건 명: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,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및 동법 제48조제2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	대표	공시송달 내용
공단종합상사	143-**-*****	경기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시청로 959 107~108호	이OO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

4. 공고기간: 2026. 7. 10. ~ 2026. 7. 24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1과(경기도 수원시 서부로 2166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.0503-8803-0250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(Tel. 031-259-021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